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찬성자 9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2237호
- 다. 발의일자 : 2017. 11. 8
- 라. 회부일자 : 2017. 11. 10

2. 제안이유

시민안전과수꾼의 양성을 통해 초기대응교육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할 필요 있음.

3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에게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토록 함.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 - 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을 통해 초기대응교육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 수립을 위해 시장에게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토록 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평가)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</p>

- 동 사업을 서울시가 2015년부터 10만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을 목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60,668명이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한 상황([표2]참조)으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, 그 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2]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실적 ('17.9.30. 기준)

(단위: 명)

구 분	2015	2016	2017	합계
양성 목표	10,000	30,000	30,000	70,000
실제 양성	10,380	30,189	20,099	60,668